

2024년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1. 23.(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손수호, 안효질, E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분과위원장 호선의 건 분과위원장 대행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숙형 부장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1건(안건번호 제2024-658호~89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658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 무단 촬영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뮤지컬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59호는 ○○○ 카페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 영상을 무단 추출하여 게시한 점, ◇◇◇에서 승인 없이 다운로드,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원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60호~662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63호~681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82호~683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84호~701호는 웹하드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0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328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4-473호~80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328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호선의 건

- 이숙형 부장: 전임 분과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새로이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로 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대행: 현재 공석인 2분과 분과위원장 호선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A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B, C, D 위원: A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함.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선출 안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A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등 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2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5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65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현재 공연중인 뮤지컬의 밀캠 영상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뮤지컬의 경우 커튼콜은 촬영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영상은 커튼콜은 아니고 엔딩 마지막 곡으로 보임. 원안은 경고 가결인데 경고를 하게 되는 경우 게시자가 게시물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 이숙형 부장: OSP에서 경고를 이메일로 보내는데, 게시자가 메일을 수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D 위원: 신고인은 누구 인가?
- 이숙형 부장: 신고인은 일반인으로 권리자는 아님.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영상은 53초가량 이지만, 해당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여지도 있음.
- E 위원: 일반적으로 뮤지컬 라이선스를 구매하여도 공식 홍보 영상을 포함하여 30초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저는 삭제 및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임.
- B 위원: 만약 민원인이 30초 정도를 올렸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E 위원: 관계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분명히 찍지 말라고 안내를 하는데 불법으로 찍은 건 사실이고, 만약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 유지되면 민원이 입장에서는 방조하는 것처럼 보여, 삭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A 위원: 해당 부분은 권리자들간에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으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제가 좀 전에 문의 드렸던 것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뮤지컬의 마지막이나 연극의 마지막에 촬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쭙 본 것임. 그리고 해당 블로그가 일종의 영리 목적인 파워블로그인지 여

부, 저 영상이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바로 삭제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심의했던 선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 동안 심의해 왔던 판매 게시물이 아님. 기존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삭제 가결을 했는데, 현재까지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53초 분량은 그렇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론 30초는 넘어섰지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 영상 자체가 조악해서 저 영상 그대로는 어떠한 시장 대체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저도 경고 의견임.
- A 위원: 침해 사실은 인정하는게 맞을 것임. 다만 삭제처럼 너무 강한 조치를 하기에는 블로그나 게시물의 성격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함. 저도 경고가 맞다고 봄.
- B 위원: 저도 경고 의견에 동의함. 왜냐하면 공연 관람 안내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1초든 53초든 그걸 어겼다는 것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 작품을 이해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게시자가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의 감흥을 표현하다 보니 직접 찍은 영상을 올린 것 같음. 그렇지만 민원인이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으므로 경고 정도가 맞다고 봄.
- D 위원: 저는 경고도 과하다고 생각함.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해당 뮤지컬의 공연 주최

자에게 문의를 해서 이런 경우 관리자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게시자는 공연을 관람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처럼 후기 및 영상을 올릴 정도로 팬으로 보이는데, 잘못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E 위원: 뮤지컬 업계에서는 이런 것을 좀 싫어함. 심의대상 게시물에 올라오는 영상을 과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게시자는 아마 해당 뮤지컬의 팬 일 것임. 이 경우 다른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공연 관련 약속을 다 지켰다, 나도 찍고 싶지만 안 찍었는데 저건 왜 그냥 두냐는 것임. 아마 신고인 본인도 찍고 싶었지만 안 찍었는데, 보니까 게시자가 가장 중요한 장면을 50초 정도 찍어서 올린 것임. 만약 이런 것이 방치되면 50초 정도는 찍어서 올려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음.
- C 위원: 보호원의 설립 이유가 인터넷상으로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규제 하는 것임. 이런 경우 본래 목적인 관련 심의대상 게시물 때문에 피해가 확산 될 것인가 의문임.
- E 위원: 밀캠 판매가 너무 심해서 제작사들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밀캠이 엄청 퍼져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도 굉장히 예민함.
- C 위원: 만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연히 재생 시간에 상관없이 규제를 할 것임.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판매용이 아님. 그래서 기존 심의 사례인 뮤지컬 판매 게시물처럼 똑같이 보기는 어려움.
- E 위원: 민원인의 의도는 아마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보임. 50초 분량을

경고하는 경우 게시자가 경고를 받고 안내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함.

- 이숙형 부장: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좀 알리자고 E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음.
- D 위원: 경고의 내용을 좀 완화해서 '공연 실황을 단순히 녹화를 해서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게시자에게 안내할 수는 있는가?
- 이숙형 부장: 경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가는 예시 문구가 있음. 해당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임.
- E 위원: 신고인은 심의 결과에 대해 답변을 받을 때 경고를 했다고 답변을 받는가?
- 김준근 주임: 신고 페이지에서 건별로 심의결과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순번 1번에 대해 원안대로 경고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저는 경고 및 삭제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정족수 기준 4:1로 안전번호 제2024-658호 심의대상 게시

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65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게시자가 ◇◇◇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 카페에 mp3 파일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있는 음원은 음악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음원인가?
- 이숙형 부장: 동일한 음원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수라라는 유튜버는 자신의 음악을 ◆◆◆◆라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음.
- A 위원: 게시자가 ◇◇◇에서 음원을 임의로 추출해서 카페에 업로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출해서 올린 파일과 ◇◇◇ 영상에 있는 음원은 동일한 것인가?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은 mp3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가?
- 김준근 주임: mp3 음악 파일과 ◇◇◇ 영상은 동일하며 해당 카페 회원은 자유롭게 심의대상 게시물에 있는 mp3 음악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순번 2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65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660호~66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660호~66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660호~6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663호~68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4-663호~68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663호~6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682호~68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4-682호~68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4-682호~6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684호~701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4-684호~70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684호~70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702호~89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악인전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759호(‘악인전기’)는 2023.10.14.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210포인트에 판매중임.

(‘낮에 뜨는 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836호(‘낮에 뜨는 달’)는 2023.11.01. ~ 2023.12.14. 방영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중임.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857호(‘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는 2023.11.17. ~ 2024.01.12. 방영한 해외 영화드라마로 웹하드에서 35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4-702호~8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4-702호~89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인건번호 제2024-658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인건번호 제2024-659호, 제2024-660호~662호, 제2024-663호~681호, 제2024-682호~683호, 제2024-684호~701호는 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4-702호~89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기사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인건번호 제2024-473호~800호(순번 1번~328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6.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안효질

위원 한승원